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새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1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7월 31일

발 의 자: 이새날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동욱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상혁, 박 석, 박춘선,
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옥재은, 유만희, 윤기섭,
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종배, 이희원,
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
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
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49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, 이를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과 중복되고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(안 제2조).
- 나.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4항 신설).

다.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교육시설의 장과 그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규정함(안 제 5조제2항 신설).

라. 그 밖에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로교통법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3세미만”을 “13세 미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교육시설”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.

6. “통학로”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“어린이 보호구역”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

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교육시설의 장과 그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제2항 중 “어린이보호구역”을 “어린이 보호구역”으로 한다.

제7조의4제1항 중 “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”를 “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”으로, “시행주체”를 “공사 시행주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”를 “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”로 한다.

제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LED”를 “발광다이오드(LED)”로 한다.

2. 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

3. 주변과 구분되는 도색의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에 의한다”를 “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등에 의한”을 “등으로 하여금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조례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조례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어린이 보호구역“이란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(<u>13세 미만</u>의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</p> <p>2. “초등학교 등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·특수학교를 말한다.</p> <p>3. “보육시설”이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(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)을 말한다.</p> <p>4. “학원”이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(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)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<u>13세 미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5. “교육시설”이란 제2호와 제3호,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, 학원을 말한다.

6. “통학로”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“어린이 보호구역”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.

7. (생략)

제4조(기본계획수립 등) ① ~ ③

(생략)

<신설>

제5조(실태조사) (생략)

<신설>

5. “교육시설”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.

6. “통학로”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“어린이 보호구역”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.

7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기본계획수립 등) ① ~ ③

(현행과 같음)

④ 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교육시설의 장과 그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

제7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
정차 및 주차금지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
지정된 시설의 주(主) 출입문과
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
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차
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7조의4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
사현장 관리) ① 시장은 어린이
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
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
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
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
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
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
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7조의5(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
지원)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
역 및 어린이통학로, 교육시설
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
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

자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
정차 및 주차금지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 어린이 보호구역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4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
사현장 관리) ① ----- 필요한
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
사현장에 대하여 -----

-- 공사 시행주체-----
-.

② -----
----- 대하여 어린이 통학
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--
-----.

제7조의5(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
지원) ① -----

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

3. 엘로카펫

4. (생략)
5. 횡단보도 LED 안전표지판

6.·7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어린이 안전교육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.

1.·2. (생략)

제9조(교통안전지도사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어린이의 등·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

3. 주변과 구분되는 도색의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

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 발광다이오드(LED)

6.·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어린이 안전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으
로 한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교통안전지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·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1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----- 등으
로 하여금 -----
-----.

제11조(권한의 위임) -----
조례에 따른 -----

-----.